

(별표 1) 강사의 자격기준

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	대학졸업자 · 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 · 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	강 사	1	1	2	1	2

※ 비 고

1. 이 표 중 대학은 사범대학·교육대학을,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(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) 및 종전의 교육대학·초급대학·전문대학·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.
2. 연구실적이라 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 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.
3.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